

##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 연구의 동향과 인식론적 전망

: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의 가능성\*

성 정 숙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이 나 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본고의 목적은 동성애에 관한 사회복지(학) 지식생산 양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 실천적 확장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의 성적 소수자에 관한 연구 경향들은 병리와 결함으로 개념화했던 초기의 의료적 담론을 넘어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인권담론으로 이동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수'를 정상화하고 규범화하는 이분법을 전제하고 '타자화되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간과하면서 다양성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두 가지 담론 모두 섹슈얼리티에 관한 본질론적 입장에 근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반해 페미니스트들은 섹슈얼리티를 사회적 구성물이자 역사적으로 의미 부여된 사회적 장치라는 인식하에 섹슈얼리티와 동성애에 관한 새로운 이론화를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남성중심사회에서 사회적 억압에 대한 변혁의 주체로서 레즈비언 정체성을 강조하며, 페미니스트 퀴어이론은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분류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해체하고자 한다. 이 이론들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을 제안하며,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게 하고, 이성애/동성애의 이분법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의미화된 권력의 효과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자들은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의 통찰력을 빌어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구성될 것을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보다 진보적 사회복지학의 지평을 지향하고자 한다.

주제어: 섹슈얼리티, 성적 소수자, 동성애, 이성애, 레즈비언, 성적 지향, 의료적 담론, 인권담론, 사회적으로 구성된 섹슈얼리티, 수행적 젠더, 급진적 페미니즘, 퀴어이론.

※ 투고 2010년 4월 30일, 심사완료 2010년 10월 26일

\* 이 논문은 성정숙의 박사학위 논문(2010) 일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 1. 서론 및 문제제기

2010년 '동성애'와 연관된 최대의 화두 중 하나는 동성 커플 관계가 전통적 한국 가족의 삶과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이를 둘러싼 공방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homosexuality)와 관련된 담론<sup>1)</sup>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동성애인권단체들이 사회운동의 한 주체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점과 연관된다. 당시 '인권'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관용이 요청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에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sup>2)</sup>과 섹슈얼리티(sexuality)<sup>3)</sup>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 또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실천적 영역에서 섹슈얼리티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은 그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가시화되지 않았던 동성애에 관한 담론들을 왕성하게 양성해냈지만, 실제 공식적인 논의의 수준

- 1) 담론(discourse)은 조직들과 제도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언술들, 단어들, 범주들, 그리고 신념들의 구조이다. 어떤 담론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가치 있으며, 덜 중요하게 간주되는 담론들은 주변화된다. 따라서 권력과 지식은 담론들 안에서 함께 구성된다(Foucault, 1980; Dominelli, 2002, p. 33에서 재인용).
- 2)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성적인 관심, 성적인 욕망이 어떤 성적 대상을 향해있는지에 관한 자기 인식을 말한다. 1980년대에는 성적 선호(sexual preference)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동성애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거나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선호나 기호의 차원으로 오인(誤認)하게 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 지향이 한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본다. 성적 지향을 생물학적 성(sex), 젠더 정체성, 사회적 성역할 등과 구별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참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소수자사전 <http://kscre.org>).
- 3) 한국어로 성(性)이라 해석될 수 있는 영어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인데, 섹스(sex)가 생물학적인 성차와 이에 따른 남/여 구분, 혹은 성행위(sex act)를 의미한다면, 젠더(gender)는 남/여 구분의 사회적 구성(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인 성별(성역할)을 의미하며,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의 방식은 시공간에 따라 다르며 이론적 맥락에 따라 달리 이해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섹슈얼리티는 성적 욕망, 실천, 정체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문화 속에서 여/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과 연관된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성적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감정 및 관계들을 포함하며, 타자에 의해 성적으로 정의되거나 정의되지 않는 방식이자,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 된다. 이때, 성적이라 여겨지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한 개인에게 성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역겨운 것, 혹은 정치적인 것이 되며, 상이한 시공간에 따라 실천 양상뿐만 아니라, 그 의미마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 모든 것이 사회적 구성물이자 제도 담론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한다. 관련 논의는 이나영(2009)을 참고할 것.

은 '찬성 대 반대'라는 일천한 논리에 머물러 있으며, 몇몇 분과학문 이외에는 학문적 논의 또한 활발한 실정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동성애 연구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어떤 방식이든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복지(학)에서는 실천적, 정책적 접근을 막론하고 '성적 소수자(sexual minority)'<sup>4)</sup>의 삶과 복지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적체성에 부과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와 낙인,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고충과 사회적 욕구는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서 모두 중요한 지점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sup>5)</sup>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현실은 강력한 '이성애중심주의(heterosexism)'<sup>6)</sup>의 작동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 4) '성적 소수자' 라는 용어는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수인 성적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레즈비언' 이나 '게이' 보다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계와 사회에서 폭넓게 수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쟁적인데, 첫째는 소아성애자, S/M, 복장전환자, 페티시스트 등 이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둘째는 개념상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용어와 관련된 논란은 본 연구의 영역 밖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로 한정하였으며, 이 단어들의 영문 첫 글자만 따서 조합한 'LGBT' 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다만 각각의 차이가 고려되고 명명이 살아있는 LGBT로서의 의미보다는 다수 대 소수의 이분법에서 '소수자' 라는 포괄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성적 소수자' 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성적 소수자와 LGBT의 범주에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성애자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고, 트랜스젠더에 관한 논의는 동성애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이다. '성적 소수자' 라는 묶음으로도 논의자체가 극히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 LGBT 각각의 차이 혹은 더 많이 명명될 수 있는 차이들(LGBTQA...)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성애자와 '성적 소수자' 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에서 섞여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 5) 동성애 혐오증은 '호모포비아' 라고도 불린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핍된 사람들이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갖는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비합리적인 혐오감으로, 동성애자라는 말만 들어도 웬지 소름끼치고 역겹다는 생각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것조차 거부하는 감정이나 행동을 지칭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230).
- 6) 이성애중심주의(이성애주의)는 단순한 이성간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통칭한다. 이성애주의는 우선 인간을 오로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이한 존재로 나누고 이 두 존재 사이에는 매우 강력한 본능적인 성적 끌림이 있고, 출산을 통한 종족 보존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전제 삼는다. 또한 이성애적인 것 외에 모든 것은 비정상적으로 치부하고 혐오하며,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한채운, 2002: 47). 또한 이성애주의는 이성애가 동성애에 비해 우월하다는 차원을 넘어, 이성애적 관계가 모든 성적 관계의 보이지 않는 준거틀이 되며, 이성애가 사회를 조직하는 기본 원리이자 자연의 명령이라는 믿음에 준거한다.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일수록 이성애주의도 강하며, 이성애주의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과 학대, 폭력, 멸시 등을 만들어낸다. 자세한 이론적 근거는 추후 본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론적, 실천적 적박함이라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성적 소수자들을 'L(Lesbian)G(Gay)<sup>7)</sup>B(Bisexual)<sup>8)</sup>T(Transgender)<sup>9)</sup>'라는 구체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론과 실천 모델, 정책적 대안과 구체적인 사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서구 사회복지(학계)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동안 서구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에 관한 연구는 특정 학제나 이념을 넘어 매우 다양하고 넓은 범위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 개인의 '입장'에 따라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해 정도가 달라짐과 동시에 학문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1960년대 말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부터 최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성주의와 젠더범주의 해체 등 섹슈얼리티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작업을 주도해 왔다. 본 연구자들은 그러한 페미니스트들의 통찰력을 빌어, 사회복지(학)의 동성애 연구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인식론적 지향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욕망, 실천, 정체성을 포괄하는 성적인 모든 것으로 성적 욕망의 장치, 태도, 행위를 만들어내는 사회 담론을 의미한다(이나영, 2009: 11). 그러나 우리가 섹슈얼리티라고 인식하는 것과 섹슈얼리티를 인식하는 방식은 "주어진 것"이며 "너무 개인적이거나 혹은 너무 보편적이거나 선형적인 것"으로 가정되거나 "본질주의적인 것으로 생물학적인 젠더구분선에 따라 나뉜 이성애적 성관계"로 전제된다(MacKinnon, 1997: 162). 전통적으로 섹슈얼리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무소불위의 본능적 힘이며, 생식기 안에 신비스럽게 자리잡은 "생물학적 명령"이라는 신념이 존재하는 것이다(Weeks, 1986: 16). 이러한 인식들은 섹슈얼리티에 관한 "본질주의적(essentialism)" 접근으로 지칭되는데, 이는 복잡한 전체의 여러 속성들을 가상의 내적 진리나 본질에 준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모든 성적인 문제들 내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단일하고 기본적인, 통일적인 그 어떤 유형이 존재함이 분명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Weeks, 1986: 19). 예를 들어, 통상 '왜 동성애자가 되었는가?'라는 질문 속에 숨겨진 전제는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거나

7) 게이(Gay)는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남성을 의미한다. 남성이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 정서적, 정신적, 성적 교감을 나누고자 욕구를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게이로 정체화한 사람을 의미한다(한국레즈비언권리연구소, 2006: 11). Gay는 '즐거움'이란 의미가 담긴 용어로, 서구 동성애자 사이에서 동성애자를 비하한 '호모(homosexuality)'를 대신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박김수진, 2008: 12).

8) 바이섹슈얼(Bisexual)은 양성애자로, 생물학적으로 성의 구분이 없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적인 호감을 느끼거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한국레즈비언권리연구소, 2006: 14).

9) 생물학적 성이 여성인 사람이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한 경우, 생물학적 성이 남성인 사람이 스스로 여성으로 정체화한 경우 이들을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말한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체화한 이들을 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이하 FTM)라고 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체화한 이들을 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이하 MTF)라고 한다(한국레즈비언권리연구소, 2006: 14).

당연한 것으로서의 '이성애'이며, 이에 반하는 동성애는 자연에 반하는 '변태'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본 연구자들은 그러한 본질론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섹슈얼리티를 자연적인 소여이거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들로 보는 관점에 동의한다. 구성론자들은 섹슈얼리티를 사회관계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섹슈얼리티의 역사를 그 의미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주체에 관한 역사로 간주한다. 이는 성적 구조의 '자연스러운' 위치를 전복하여 '본질적인' 정체성에 관한 우리들의 경험과 인식, 지식 등을 재고하게 하므로, 기존의 지식체계와 과학적 이데올로기들이 섹슈얼리티를 주조해 온 방식, 즉 생물학과 몸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적인 것에 대한 도전이다.<sup>10)</sup>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섹슈얼리티를 젠더, 계급, 인종, 민족, 나이 등과 함께 우리 사회를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 인식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권력의 매트릭스 안에서 (재)구성되는 맥락에 주목해 왔다. 섹슈얼리티를 고정되고 본질적인 특성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권력에 의해 규제되며 통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정상성'으로 규정되고 당연히 전제된 이성애가 인간의 내재적, 자연적인 특질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온 것이자 사회적 위계를 조직하고 권력관계를 작동시키는 주요 원리로 분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조현준, 2008: 38). 따라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섹슈얼리티를 논한다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전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성애중심주의가 생산, 재생산되는지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일방적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적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성적 소수자' 혹은 '동성애'에 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현실에 문제제기하면서 구체적인 개입의 방식과 방향 설정을 모색하는 탐색적 작업의 성격을 띤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사회복지학의 동성애 관련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둘째는 페미니즘과 한국 사회복지(학)와의 생산적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동성애(자)에 대한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서구 연구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서구 사회복지학의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작업은 서구의 연구 작업에 대한 무비판적 추수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나갔다'고 여겨지는 연구들에 숨겨진 한계들을 보다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유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 섹슈얼리티에 관한 대안적인 지식들

10) 섹슈얼리티가 사회적 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섹슈얼리티가 놓여야 할 자리는 자연이 아니라 사회나 사회적 관계이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여러 개의 역사를 가지며, 그 각각의 역사는 그 나름의 독자성 속에서 그리고 복합적인 유형의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 행위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이므로 섹슈얼리티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협과 투쟁, 그리고 인간주체의 산물인 것이다(Weeks, 1986: 33-34).

을 구축해 온 페미니스트 이론'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페미니즘과 사회복지학의 생산적 접목을 통해, 동성애에 관한 한국 사회복지(학)의 이론적·실천적 지평의 확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 연구의 동향

Russell(1996)은 『게이 100(1995)』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의 정체성에 기여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동성애자 100명을 순위를 매기면서, “동성애자 모두는 동성애자들을 둘러싼 환경과 살아온 내력이 다양하더라도 집단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주류 문화에 의해 병적이고 일탈적이고 범죄적이라고 규정되어 오거나 영원한 아웃사이더, 반란자, 유배자와 같은 소수집단으로 여겨져 왔다(p. 20)”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경향을 반영하듯,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들도 크게 의료적 담론과 인권적 담론이라는 두 가지 지형에 포섭되어 왔다.

### 1. 의료적 담론 : 질병으로서의 동성애

결함, 질병, 그리고 역기능이라는 은유(metaphor)는 원조 전문직에서 깊은 뿌리로 이어져 왔다(Cower, Anderson, & Snively, 2006: 93). 역사적으로 사회복지(학)는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잠재력, 강점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면서 발달해왔지만, 실제 원조직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것, 결함과 잘못된 것, 실패 등에 관심을 더 기울여왔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의료적 담론은 가장 전통적인 접근방식으로서 모든 영역에 스며있으며, 사회복지실천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기제를 제공하는 매우 강력한 이데올로기이자 패러다임이다. 이 의료적 담론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로부터 벗어난, 소위 결핍된 자나 결함을 가진 자, 일탈자들이 외현화하는 문제행동이나 증상 등에 주목해서 치료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중심적 관점을 포괄한다(Blundo, 2002; Cowger et al., 2006; Saleebey, 2006). 전적으로 개인에 초점을 두고 또 전적으로 그 개인의 '질병' 혹은 '결함'으로 설명하는 이 담론을 통해 '전문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며, 이들은 언제나 개입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서 타자화된다. 따라서 이 패러다임 안에서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소수자'<sup>11)</sup>와의 실천은 자

11) 소수자란 “사회구성체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제반 영역에서 인종, 성, 경제적 능력, 사상이나 도덕, 기타의 이유로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치와 상이한 입장에 있는 부류,” 혹은 “종교·문화·사회적 신분·언어·인종 및 정치적 이상 등의 이유로 수, 신분 그리고 정치적

연스럽게 타자화'의 전형이 된다.

예를 들어, “그(녀)는 동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 “왜 동성애자가 되었는가?”, “유전적 소인(선천적)인가? 환경적 영향(후천적)인가?”, “고칠 수 있는가?(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므로) 없는가?(유전적으로 결정되므로)”, “동성애자는 어떤 정신적,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특징이 있는가?(사회를 전염시키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등 통상적인 질문에 기반을 둔 연구들은 동성애를 병리로 간주하는 의료적 담론에서의 전형적인 문제 제기 방식들이다. Saleebey(2006)가 지적한 의료적 담론의 주요 한계는 ‘성적 소수자’에 관한 실천에서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동성애가 병리적인 질환으로 범주화되면서 동성애자도 병리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로 명명되었고, 사회적인 금기와 제도적인 범죄로 구분되면서 ‘일탈자’ 혹은 ‘범죄자’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동성애자와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은 ‘질병’이고 ‘문제’인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마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원인과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것처럼 설명되었다. 동성애자들이 겪는 억압과 차별, 어려움의 이슈는 병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는 개인적인 설명들에 의해서 결국 ‘피해자’인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에 관한 의료적 담론에서의 실천은 이들을 억압하고 타자화하는 기제 그 자체로서 작동한다고 하겠다.

『성의 역사 : 삶의 의지(1976)』에서의 Foucault의 통찰력을 빌리면, 사회복지실천가를 포함하여 ‘성적 소수자’를 치료하고 개입하고자 하는 모든 전문직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Foucault에 따르면,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과 함께 ‘성적 소수자’라는 종(species)이 발명되었고, 이들을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금기가 아닌 성과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설명하고 개입하는 의료화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식-권력이 결합된 ‘고백’의 절차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성적인 것에 대한 고유한 병적인 성질이 규정되었다. 이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 기제를 통해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듣는’ 권력이 수립되었다. 그는 근대 시기에서 섹슈얼리티가 지식과 권력이 결합된 형태인 ‘고백’의 기술과 과학적 담론의 교차 지점에서 위치하게 되면서, 섹슈얼리티가 본성적으로 병리학적 과정에 취약하며, 따라서 치료를 위한 의학적인 개입 혹은 정상화하는 개입을 요청하는 영역으로 규정되었음을 통찰력 있게 지적한다(Foucault, 1976: 89-90).

### 1) 한국 사회복지(학)의 의료적 담론 : ‘빈약성’

현재까지 한국 사회복지(학)의 여러 학술지에서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게 함에 있어서 열세에 놓인 집단” 을 말한다(권영설, 2003).

이”로 검색되는 논문은 두어 편에 불과해서 ‘성적 소수자’에 관한 담론 자체가 부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을 관통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료적 담론에 포섭되어 있다는 점이다.

권진숙과 오현숙(1995)의 “임상사회사업실천에 있어서의 성적 이슈에 관한 고찰 - 자위행위, 성난잡 그리고 동성애를 중심으로”는 아마도 ‘동성애’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첫 번째 (한국) 사회복지학 논문일 것이다. 저자들은 자위행위와 성난잡, 동성애의 개념과 원인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흑백의 논리에 근거하여 ‘잘못된 일탈’, ‘비정상’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며,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하는 사회사업가는 “좋거나 싫거나 간에” 이러한 성적 이슈를 다루어야 하므로 적절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난잡’이라는 용어 사용에 전제되어 있듯이 성적 행위의 문제를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동성애를 자위행위와 성난잡과 일방적으로 함께 묶어서 ‘성적 일탈’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의도와 달리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재확인하고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2005년 『청소년학연구』에 발표된 강병철과 하경희(2005)의 논문,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연구자들은 만 13세에서 23세의 청소년 동성애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고, 절반 정도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실을 중시하면서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학교에서의 지원방안 수립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자살로 유도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결여한 채, 위험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동성애’ 자체를 문제를 유발하는 위험요인과 등치시키는 인식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차별적인 사회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연구는 고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결국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요보호자’라는 인식 강화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복지(학)의 전반적인 무관심속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복지 실천영역에서 동성애 이슈가 석사학위논문(김혜미, 2005; 김유니, 2006)과 아동청소년학 교재(구은미·박성혜·이영미·이혜경, 2009) 중의 한 장(chapter)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청소년분야에서 동성애 이슈가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면에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종의 ‘청소년 보호’ 담론과 동성애 혐오가 전제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 담론은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실존과 가시화를 막고자 하는 보수주의적 집단에



의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이념적 도구로서 손쉽게 사회적으로 유포되고 수용된다. 핵심적인 내용은 '성적 소수자'들이란 청소년을 오염시킬 수 있는 큰 위협을 퍼뜨리는 '병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Dade County에서 반차별적 시민법(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의 금지, 시민으로서의 동성애자 권리보장)을 철폐하고자 벌였던 캠페인의 슬로건이 "Save our Children!"이었던 것처럼(Rubin, 1999: 146), 국가인권위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동성애자인권단체를 포함하여 다수의 시민운동단체가 참여했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두고 벌여졌던 반대논란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청소년 보호명분이었다.<sup>12)</sup>

소위, '정상적인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는 학교라는 강력한 제도를 통해 더 엄격하게 통제되고 훈육되어야 할 일탈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사회와 학교, 부모들이 청소년의 동성애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때의 '치기'나 '방황'으로 여기거나 상담과 치료를 통해 고칠 수 있는 '증상'쯤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학교나 가정이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체성을 충분히 탐색하고 필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강제적인 규율과 처벌이 행사되는 억압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함인희, 2003: 18-19). 동성애자인권단체에서 동성애자 청소년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학교와 가족의 현실을 매우 증대한 사안으로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성정숙·이현주, 2010: 179).

## 2) 서구 사회복지(학)의 의료적 담론 : 고위험군의 클라이언트

서구에서는 동성애자인권운동이 이루어졌던 1960년대 이후 '성적 소수자'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사회복지(학)에서 LGBT는 아동과 노인, 여성, 장애인과 함께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포섭되기 시작했다. 서구 사회복지(학)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연

12)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의 작업을 통해 정부에게 총 20개의 차별금지행위(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를 명시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결정하여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기독교단체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저지의회선교연합'을 발족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오히려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적 지향'의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반발에 따라 법무부는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의 7개 조항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확산을 조장해 가족해체를 조장하고 AIDS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1(2007.11.8)의 기사와 크리스천투데이(2007.10.24)의 기사를 참고할 것). 이 법을 제안했던 국가인권위나 법무부 게시판의 반대 의견도 "동성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동성애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요지가 주를 이루었다. 동성애자인권단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회운동단체가 함께 협력했던 이 법안은 결국 17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구와 실천도 역시 의료적 담론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관련 연구들에서 이들은 질병을 가진 환자 혹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고위험군의 클라이언트로 재현되었다. LGBT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이들의 성적 지향과 이들이 겪는 건강상의 문제와 심리사회적인 문제, 행동상의 이탈 등 예를 들면 AIDS와 약물중독, 비행과 자살, 우울과 같은 건강상의 위험과 정신적인 부적응, 마약, 비행과 범죄 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치료와 사회적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Voorhis와 Wagner(2002)의 연구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주요 사회복지학술지 4개<sup>13)</sup>에서 발표된 논문 중 동성애에 관한 내용을 다룬 논문들의 2/3(77편 중에서 51편)가 HIV/AIDS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 사회복지(학)의 실천과 연구에서도 동일하다. Charnley와 Langley(2007: 309-310)는 자국 내 다수의 연구들이 혐오적인 단어를 사용해 LGBT의 삶을 묘사하고, 약물과 알코올 남용, 자살, 우울, 낮은 자존감 등 위험 행동들을 동성애 정체성과 직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980년대 서구에서는 '동성애자=AIDS 환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고착화되었는데, 사회복지(학)의 연구나 실천 역시 이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특히 미국에서 1980년대는 자유화의 결과가 사회적 불안과 연관되었고, 이는 다시 도덕적 공황(moral panic)으로 둔갑하여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목계를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조건, 사람, 집단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게 되었다. 특히 AIDS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불안에 직면하게 되자, 비전통적인 성행위는 죄악과 질병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고, 성과 가족과 같은 전통적 통합의 가치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된 동성애자들은 도덕적 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상의 해결책으로 '희생양'이 되었다. AIDS는 보수적인 레이건 정부의 의도적인 묵인에 의해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게이들이 퍼뜨리는 전염병으로 홍보되었고, 소위 게이 돌림병'은 전 세계에 '공포'로서 강력하게 각인되었다(Weeks, 1986: 141-143).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사회복지(학)의 연구와 실천도 의학, 간호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축적된 '성적 소수자'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함께 공유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성적 소수자'들의 자살시도, 자살률 등이 이성애자들보다 더 높으며, 알코올과 물질에 의존하거나 심각하게 중독될 가능성이 더 크며, 신체적인 폭력과 성폭력의 주요 희생자이거나 가해자가 될 위험이 높고, HIV 감염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Proctor & Groz, 1994; Bobbe, 2002; Elze, 2002; Thompson, 2003; Rosenberg et al., 2005; Saewyc et al., 2006). 우리 사회에서도 정신의학과 심리학 등에서 최근 '성적 소수자'에 대한 논문들이 한 두 편씩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성적 소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자살성향과 자살

13) Voorhis와 Wagner(2002)의 연구에 포함된 학술지는 *Child Welfare*, *Families in Society*,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총 4개의 학술지이다.

시도율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공선옥·오강섭·노선경, 2002; 김은경·권정혜, 2004; 김혜미, 2005; 김유니, 2006). 이 결과들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천의 토대가 되었는데, 문제는 성적 소수자들을 결합 있는 집단으로 너무도 쉽게 대상화한다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의 사회·심리적인 부적응과 어려움, 위험행동, 일탈행위 등이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클라이언트의 '문제 목록'에 등록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들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호모포비아가 적절한 치료와 개입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실천가와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혐오적인 태도, 호모포비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다(Wisniewski & Toomey, 1985; Wiener & Siegel, 1990; Berkman & Zinberg, 1997; Hardman, 1997; Ben-Ari, 2001; Lim & Johnson, 2001; Newman, Dannenfelser, & Benishek, 2002; Brownlee, Sprakes, Saini, O'Hare, Kortess-Miller, & Graham, 2005; Green, 2005; Camilleri & Ryan, 2006; Foreman & Quinlan, 2008; Swank & Raiz, 2010).

이 연구들에서 측정된 사회복지사의 호모포비아 수준은 연구마다 다소 엇갈리지만, 사회복지사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Wisniewski와 Toomey(1985)의 연구에서는 MSW 사회사업가 77명 중 1/3이, Wiener와 Siegel(1990)의 연구에서는 264명의 의료사회사업가 중에서 41%가 동성애혐오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Berkman과 Zinberg(1997)의 연구에서는 187명의 사회사업가 중에서 단지 11.2%만이 동성애 혐오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응답자로 분류되었으며, Newman과 동료들의 연구(2002)에서는 2,837명의 응답자 중 단 6.5%만이 동성애를 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Swank와 Raiz(2010)의 연구에서 실증적인 측정과 통계적 해석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점수는 동성애에 관해 '약한 호의적 태도(slightly favorable impression)'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단순하게 문항별 빈도를 본다면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여성동성애는 최악이다'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38%이고, '레즈비언들은 아픈 사람들이다'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12.3%, '남성동성애자들은 역겹다고 생각한다'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22.8%, '동성간 성행위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5.3%, '남성동성애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일 뿐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29.2%에 이른다. 의견을 유보하거나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고려한다면, 부정적인 응답률이 상당한 수준이며, 이 수준은 상담이나 심리학 등 다른 휴먼서비스 전공학생들에 비하면 매

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Swank와 Raiz(2010)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가 '호모포비아'를 '이성애주의'로 대체하려는 사회복지(학)의 최근의 경향(Brownlee et al., 2005; Green, 2005; Camilleri & Ryan, 2006; Brown, 2008; Foreman & Quinlan, 2008; Swank & Raiz, 2010)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호모포비아의 개념이 '성적 소수자'의 억압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분석만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의식을 피력하고 있다. 즉, '호모포비아'라는 의료적 단어를 통해서 사회구조적인 억압의 문제를 일종의 심리적인 거부감 혹은 선호도의 차이로 환원시키는 방식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적 기제들을 일종의 병리적인 증상으로 격하시키는 의료적 담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결과 연구들이 제시하는 주요한 해결책은 동성애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신념과 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교육의 차원에 한정되어왔다. 그러나 이들과처럼 개인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인 설명을 위해서 억압의 기원을 '이성애주의'로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못하고 있다.

## 2. 인권 담론 : 피해자 혹은 소수자

인권 담론은 의료적이고 문제중심적인 실천에 의해 간극이 벌어졌던 사회복지(학)의 사회적 사명과 집합적인 가치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자'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제도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한인섭·양현아 편, 2001; Ife, 2001;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2004; 손병돈 외 공저, 2008). 사회복지(학)가 인권에 관한 것이거나 적어도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는 연구이자 실천임에 매우 자명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욕구(needs)'의 사정과 '충족'의 과정을 강조하는 '욕구의 사회복지'와 경합 중이라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Ife(2001: 133-138)는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의 우세속에서 '욕구'의 개념이 '당연히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수용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현재의 전문가에 의한 욕구사정에 기반을 둔 실천방식은 가치·이데올로기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특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욕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 이면에 깔린 암묵적인 권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권리가 전제되어 있다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그 둘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욕구'가 '권리'로서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욕구와 권리의 연계'에서 욕구에서 권리로 재인식된 권리들이 모두 '인권'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의 개념 또한 매우 논쟁적인 것이고 끊임없는 대화와 상

호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담론적인(discursive)' 것이지만, '인권'이라 함은 국적이나 인종, 문화, 연령, 성별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에도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주장되는 그런 권리를 말한다. 특정의 제한된 권리가 아니라 보편적이어서 어느 지역의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Ife, 2001: 34). 하지만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범주 자체를 한정하는 역사적인 방식을 통해 '인간'의 종에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해왔다는 점이다(Ife, 2001: 32). 노예, 여성, 아동, 그리고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소수자들의 권리는 인권의 개념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더디게 포섭되었거나 아직은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들이다.

인권 담론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논의는 다른 불리한 집단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 인권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온 국제사회나 서구의 사회복지(학)에서도 게이와 레즈비언의 인권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거나 원론적인 원칙만을 표명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이는 앞서 지적된 역설로 '인간'의 권리에 관한 논의에서 인간의 범주로부터 배제되어온 이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전문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United Nations, 1948)"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즈비언과 게이들에 대한 학대를 국제적인 대응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구상의 많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체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거나 살해되는 등의 극단적인 혐오범죄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들이 동성애를 종교나 문화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인권을 불허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보여주지 못한다(Reichert, 2003: 251). 동성애자의 인권문제가 문화적 상대주의의 원칙에 의해 쉽게 소거되는 것은 동성애자의 섹슈얼리티가 여전히 소수의 비정상적이고 윤리적인 단죄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해체할 수 없는 인권 담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1) 한국 사회복지(학)의 인권담론 : '배제 속의 배제'

소외되고 빈곤하며 권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 사회적 서비스 체계의 구축하고 이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의 개념인 동시에 핵심적인 사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은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포괄적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노숙인, 탈북 동포, 시설수용자, 성매매피해 여성, 가출청소년 등의 좀 더 구체적인 문제와 욕구,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관심을 경주해왔다. '소수 집단'에 대한 한국 사회복지(학)의 접근에서

전반적인 최근의 경향은 개인의 결함과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위주의 의료적 담론으로부터 차츰 벗어나 사회구조의 결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과 같이 빈곤하고 권력없는 계층과 집단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들(송다영, 2003; 김재엽·노충래·최수찬·조춘범, 2005; 남기철, 2005; 이익섭·최정아·이동영, 2005; 전홍규, 2005; 노혜진·김교성, 2008; 박영미, 2008; 배화옥·김유경, 2009; 이희연, 2009; 한경혜·주지현·정다겸, 2009)과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아젠다 안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탈북동포, 다문화 가족 등의 다양한 집단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 등에 관한 연구들(한인영·김유정, 2006; 김연희,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이방현, 2007; 윤혜미, 2009)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인권담론이 사회복지(학)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소수자'는 사회적 배제나 다양성 등 인권담론의 발전된 문제제기에 포섭되어 있지 않다. 서구의 사회복지(학)이나 혹은 한국의 다른 학문 영역 즉, 법학이나 사회학 등에서는 '소수자'의 논의에서 '성적 소수자'가 부분적이지만 가시화되어 있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학)에서는 '소수자'의 인권적 접근에서조차도 '성적 소수자'는 제외되는 이중적인 배제의 현실에 머무른다. 따라서 이 담론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010년의 "동성애자 인권활동가의 청소년기 경험과 탄력성에 관한 질적 연구(성정숙·이현주)"가 동성애자 청소년이 인권활동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경험을 강점관점의 시각에서 연구한 논문으로서 유일하다. 이 논문은 그동안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복지(학)의 긴 침묵을 깬 연구이며, 기존의 병리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통해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동성애자들의 경험, 특히 숨겨진 이야기인 강점과 탄력성(resilience)에 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 연구 역시 동성애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론적 검토나 사회구조적인 분석은 여전히 부재하다.

'배제 속의 배제'로 특징지어지는 사회복지(학)에서의 더딘 논의에도 불구하고, '동성을 향한 병리적인 욕망에 시달리는 주체'로서 경험되고 정의되었던 1970~1980년대의 동성애자 정체성은 1990년대 이후 당사자운동인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통해서 '권리의 사회적 주체'로, 공통의 문화에 기반한 '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자조모임이나 친교모임의 형태로 유지되던 동성애자모임들은 인권, 시민권 등의 정치적 기획들을 채용하면서 조직적인 인권운동조직으로 변형되는 변동의 시기를 맞았다(서동진, 2005). 동성애 정체성이 인권담론 안에서 하나의 정치학(politics)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서동진(2005: 78)은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 모델에 근거한 동성애자 운동의 제도화과정은 한국사회에서 인권담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경향과 깊은 상관이 있으며, 새로운 국제인권체제의 규범의 영향력과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이후 급부상하게 된 인권담

론의 헤게모니에 의해서 동성애자의 사회적 현실이 인권이란 개념을 통해 재현되었으며, 인권을 통한 '성적 소수자'의 삶의 문제화(problematization)는 권리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공유하는 소수집단으로서 '성적 소수자'라는 모델을 정착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호모포비아'와 '커밍아웃'으로 요약할 수 있는 '성적 소수자'의 정치학은 성적 소수자들이 자기혐오와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동성애자 정체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기를 요구하는 관용적인 다문화주의의 전략을 전개한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이 정치학은 '자유주의적인 정치학'의 연장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비록 포괄적이고 사회적인 정책, 제도, 법률 등을 제시하거나 이성애규범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의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는데 기여했다(서동진, 2005: 79).

2001년 국가인권위가 발족되면서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자 집단의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도 보다 중요하게 거론되었고, 2005년 공적 기관에 의해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5)』와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한국청소년개발원, 2006)』가 발간되었다. 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권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가 실시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국레즈비언권리연구소, 2006;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5~2008). 중대한 진전이자 성과 자체가 되는 이 조사들은 '성적 소수자'가 겪게 되는 부당한 인권 침해와 차별로 인한 피해경험들을 드러냄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제적으로 성적 소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과 차별로 인한 열악한 삶의 현실과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주로 강조하게 됨으로써 '다수의 관용과 배려,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이미지가 더불어 강화되는 역설도 함께 뒤따랐다.

## 2) 서구 사회복지(학)의 인권담론 : 다양성과 문화적 역량

인권담론에서의 연구 성과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 사회복지(학)과는 대조적으로, 서구 사회복지(학)에서는 '성적 소수자'와의 실천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체계화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의료적 담론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배경으로 결합보다는 강점과 탄력성에 주목하는 강점관점 접근(Anderson, 1998; Akerlund & Cheung, 2000; Jones, 2002; Mallon, 2008)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강점시각은 개인이나 집단의 강점을 원조관계의 중심에 둬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이나 집단을 병리적인 존재로 보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인권에 관한 원칙들을 특정한 상황에 보다 더 잘 연결시킨

다(Reichert, 2003: 298). 또한 증상이나 문제에 집중하는 개인적인 설명과 개입이 아니라, 미시적인 개인에 관한 것에서부터 거시적인 수준의 환경까지 포함하는 환경변화전략을 제시하고 사회의 차별에 도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는 반차별적 실천 모델(Bayliss, 2000; Langley, 2001; Tew, 2006)과 개인적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개인적 임파워먼트와, 개인의 행위와 습성을 사회적 연결망과 연결하고 자기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나 자산에 대한 접근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임파워먼트의 두 축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의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임파워먼트 실천모델(Tully, 2000)도 구체화되었다. 이 모델들은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처우를 강조하는 인권 실현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Reichert, 2003: 298).

인권 담론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다원주의적 이념을 근거로 한 다양성의 의제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성애 친화적 모델(gay affirmative model), 혹은 문화적 역량모델(cultural competent model)이다. 사회복지(학)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역량'은 클라이언트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배경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민감성 있는 실천 역량을 강조해왔다. 2000년 이후 인종과 민족을 중심으로 개념화되었던 '다양성'의 개념이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역량의 실천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성적 소수자' 집단을 소수 문화집단으로 인식하고, '문화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성적 다양성 혹은 성적 지향의 이슈를 민감성 있게 다룰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을 강조한다(Bergh & Crisp, 2004; Charnley & Langley, 2007; Crisp & McCave, 2007). 1996년 NASW가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사회계급, 능력에 의해 정의되는 집단들에게 문화적 실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공표함으로써, 다양성의 개념은 성적 소수집단과의 실천에서도 중요한 원칙이자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LGBT 성원들과 문화적으로 민감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집단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수 집단과 문화에 관한 지식과 태도, 신념과 가치, 원칙과 기술 등의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사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Bergh & Crisp, 2004).

### 3) 인권담론과 다양성 의제의 한계

Charnley와 Langley(2007)는 1998년 인권법, 2004년 시민파트너쉽법안, 2006년 평등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회 전반에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있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도 차별금지의 근거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에서 성적 지향과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비가시적이며,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섹슈



얼리티의 다양한 형식을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판적이다. Mule(2006)는 캐나다 사회복지실천 윤리강령과 사회복지교육의 교과과정에서 성적 지향의 이슈를 분석한 결과, 성적 지향이 강령에 언급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교과과정이나 관련 지침에는 “다문화 집단,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집단”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고, 여전히 정확한 명명없이 주변화되어 있거나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다양성’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안에서 LGBT의 이슈가 얼마나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며, 다양성의 의제 자체가 그동안 강조되지 않았던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주목하게 하는 기여가 컸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의제의 주요한 표적 집단이 ‘인종적, 민족적’ 소수집단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성적 소수자’와 성적 다양성을 가시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공통적인 비판점은 쟁점이 단지 성적 지향에 국한되어 있고 그 또한 형식적인 논의에 불과하여, 인권의 확장이나 반차별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반이성애주의적인(anti-heterosexist)’ 실천으로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GBT 집단을 ‘문화적인’ 소수 집단으로 논의하는 것은 분명히 큰 한계가 따른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들의 인권에 대한 유보가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상대주의 안에서 간단하게 정당화되는 맥락처럼,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이들의 삶을 교차하는 사회적 억압의 구조적인 축임에도 불구하고(Collins, 2003), 문화적인 논의에서는 사회적인 억압과 지배 구조, 권력관계 등이 잘 드러나기 어렵다. 사실, 낙인이 따르는 열등한 범주에 속하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이 없는 집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범주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피해자나 소수자로서 삶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은밀하든지 혹은 노골적이든지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에 기여하게 된다. 인권담론과 그 안에서의 다양성 아젠다는 성적 소수자들을 환자나 고위험군의 클라이언트로 간주하는 의료적 담론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수자’로서의 구분과 경계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두텁다.

인권담론에서 사회복지(학)의 집합적 가치와 사명을 보다 강조하는데 기여해왔던 ‘사회적 배제’의 개념 또한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제도와 권리로부터 소외된 집단들이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삶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가시화하고, ‘소수자’로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박탈당한 삶을 구체화하지만, 이들이 놓인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급진적으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강신욱, 2006: 21) 이들의 배제된 삶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이들을 전형적인 ‘피해자’로 고착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배제하는 다수’와 ‘배제당하는 소수’를 전제하면서 ‘배제된 자’로 낙인지우고,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 ‘피해자’로 구성하는 타자화의 위

힘스런 궤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다양성, 다문화의 의제 또한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모호하게 가리면서, '피해자화'와는 다른 역(逆)의 방식을 통해서 '성적 소수자'를 타자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로서의 수용과 배려"라는 슬로건을 통해 '성적 소수자'의 삶에 관한 다수의 인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만, 여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인식론적 함정이 포진되어 있다. 즉, '성적 소수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불평등한 삶을 다양한 삶의 방식 중의 하나인 것으로 자연화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단히 격하시킨다. 이렇게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슈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삶의 여러 방식들을 단순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에는 섹슈얼리티가 조직해내는 사회구조적 억압의 실체는 드러나기 어렵다. 억압의 기원도 '그들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로 오해되기 쉬우며, 그래서 그 결과 이 모든 것의 해결이 '다수의 관용'으로 수렴된다.

다시 말해서, 단지 '소수'이거나 혹은 차이가 다른 여러 가지의 것'으로 병렬적으로 단순 나열되는 방식은 다수로의 '동화'를 지향하거나 규범화하는 범위 내에서 용인될 기회를 얻는 것뿐이다. '성적 소수자'로서의 접근이 가진 가장 큰 한계점은 사회구조적 억압의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적 소수자'라는 구분 자체가 '다수'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정상화하고 규범화하는 '다수 대 소수'라는 이분법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성애규범성(heteronormativity)을 근거로 해서 다수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은 언제나 늘 '정상이지 않은' 타자로 명명되고 구분된다. 따라서 인권담론에 내재된 이성애규범성을 변형하지 않는 한 이 담론은 보수적인 '동화(assimilation)의 정치'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서동진, 2005: 85). 서동진(2005: 68)은 사회적으로는 인권의 담론이 증대되고 민주주의나 소수자 등의 용어가 친숙할 정도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소수자'의 삶과 공적인 영역이 어떻게 매개될 수 있는가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희박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공적인 영역은 이성애규범성에 따라 규제하는 반면에 소수적인 성정체성을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소비 행위의 차원에서 개인화(privatization)하는 한계 안에 서만 '관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페미니즘 등 다학제간 연구의 성과들이 확산되면서 서구 사회복지(학)에서는 중대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핵심 키워드였던 '성적 지향'을 '섹슈얼리티'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Brown, 2008; Carr, 2008; Fish, 2008; Hicks, 2008a; 2008b; Jeyasinghram, 2008). Fish(2008)는 LGBT 연구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성적 지향'이 아닌 '섹슈얼리티'임을 주장하면서 이 이슈를 좀 더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호모포비아'에 대한 연구가 이성애를 특권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LGBT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한 개념을 통해 이 한계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Charnley와 Langley(2007)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것 자체가 문화적인 유능한 역량으로 번역되기는 쉽지 않으며,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수집단들이 가치절하되고 주변화되는“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LGBT 이슈가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이기보다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조직하는 권력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사회복지(학)에서도 섹슈얼리티와 동성애, 이성애중심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 III. 페미니즘 이론'들' : '성적' 주체의 확립과 젠더 범주의 해체

이상에서 살펴본 바,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관한 담론의 이론적 지형은 성적 소수자를 병리화하는 의료적 관점과 성적 소수자의 결함과 어려움에 주목하는 문제중심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점차 다원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는 '성적 다양성'과 '성적 지향'에 관한 이슈로 이동해왔다. 다양성과 성적 소수자의 인권으로서의 접근은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성적 소수자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초기의 의료적 담론에 의해 무겁게 지워졌던 병리적인 낙인의 무게를 조금은 털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정상이 아닌 '비정상', 다수가 아닌 '소수자', 주체가 아닌 '타자'로서 호명되고 이해되면서, 주류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허용하고 관용할 것인지에 관한 모색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체성을 태생적이고 자연적인 것처럼 고착된 것으로 성적 소수자들을 설명하는 '구분'과 '범주' 자체를 문제제기하고 이에 숨겨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권력 관계를 추적하는 연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위 '이등 시민'으로서 인식되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범주와 의미가 과연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담론구성의 내용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재)구성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의 중심에 페미니즘 이론이 있다. 본 장에서는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을 196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발전해 온 포스트모던 퀴어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레즈비언리즘(Lesbianism) : 비판과 도전으로서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의의 맹아는 19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제1기 여성운동의 흐름(제1의 물결 the First Wave)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지만, 인간의 본성에 속한

자연적 소요로서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유동하는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실천으로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본격적인 사고와 연구는 1960년대 후반,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한 제 2기 여성운동의 흐름(제2의 물결 the Second Wave)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이나영, 2009: 14-15). 당시의 페미니스트들은 성적 억압과 권력관계에 주목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현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여성 동성애적 관계인 레즈비어리즘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성적 정체성, 억압/쾌락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이성애중심주의 등과 연관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을 놓았다.

### 1) “여성과 동일시하는 여성”

1970년 뉴욕의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발표한 “여성과 동일시하는 여성(the Woman Identified Woman)”은 레즈비언을 이해하는 방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스스로를 급진적 레즈비언들(Radicalesbians)이라고 명명한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성적 변종, 도착, 혹은 과잉성애화된 존재로 인식되는 병리학적 관점의 레즈비언의 개념에 도전하고, “여성과 동일시하는 여성(woman identified woman)”이라는 개념화를 통해 여성의 정상적인 경험, 나아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경험으로 여성동성애(female same-sex relation)를 재정의하고자 하였다(Radicalesbians, 1997). 이들은 남성중심적인 사회에 억압된 여성만의 독자적인 섹슈얼리티 영역이 있다는 전제하에 레즈비언의 범주를 확장시키면서(이나영, 2009), 레즈비언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페미니스트 주체로 명명하고 동성애와 이성애의 이분법을 해체하고자 했다(김지혜, 1998: 18).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레즈비언 연속체(lesbian continuum)(Rich, 1980)”라는 개념은 레즈비언에 대한 제한적이고 임상적인 정의를 해체하면서 레즈비언의 개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확장하였다. Rich(1980: 31)에 따르면, 레즈비언은 다른 여성과의 육체적 성관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성문화 타파를 위해 여성간의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면서 억압에 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레즈비언의 역사는 곧 여성 저항과 연대의 역사이며, 직접적으로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여성들만의 독자적 조직이나 모임, 공동체 속에서 강력한 관계에 몰입했던 모든 여성들의 역사가 된다. 여성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이성애와 동성애의 이분법을 남성중심주의의 결과로 분석함에 따라 이성애중심주의가 성차별주의의 주요 기제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성중심,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극대화되지만 이성애자 여성과 레즈비언은 '여성'으로서의 공통적인 실존과 존재로 연속체 위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레즈비언 연속체의 개념은 혁명적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숨겨진 레즈비언, 잠재적 레즈비언, 레즈비언 여성주의에 동의하는 페미니스트들을 레

즈비언 것발 아래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미영, 2007: 316). 더 넓게는 생물학적 여성 모두에게 레즈비언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을 개방함으로써 레즈비어니즘을 정치적 선택으로 개념화하고 '성적 소수자'가 아닌 페미니즘의 '정치적 주체'로서 레즈비언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레즈비언 연속체의 개념은 몇 가지 지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우선, 레즈비언의 역사를 보편적인 여성의 역사로 탐색함으로써 레즈비어니즘이 구축해온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실존적 현실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레즈비언들은 성적 실천에 따른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남성으로부터의 억압은 물론, 성적 소수자로서 심리적인 위협과 정상성으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레즈비언 연속체 개념은 동성애자가 겪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적대감을 첨예하게 인식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성애와 동성애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것은 이성애자 여성과 레즈비언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해(interest)의 차이와 불평등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용될 소지마저 있다(김지혜, 1998: 48-50). 둘째, 레즈비어니즘에 대한 정치적 의미화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여성이 서로에게 성적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즉, 성적 존재로서의 레즈비언의 섹슈얼리티를 부차적으로 다룸으로써 이성애 여성과 레즈비언이 동일한 감성과 일상,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부각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여성 이해의 동질성을 강조하게 위해 남성과 구별되는 진정한 여성의 본질을 전제하게 되었다는 점은 향후 본질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론화로 비판받는 지점이다.

## 2) 강제적 이성애와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억압의 주된 기제 중 하나로 지적하는 것은 '강제적 이성애 제도'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성애를 실제적인 성관계로부터 이데올로기, 가족/결혼 제도,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작동시키고 통제하는 사회조직의 구성 원리로 개념화한다. 이성애 제도는 단순히 성적선택으로서의 이성간의 성적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가족제도, 고용관계, 성별이데올로기, 성규범 및 법 등으로 작용하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이성애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 혹은 '여성'의 역할을 거부 하는 것 이상으로, 남성의 경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며 정치적인 권력에 편승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Wittig, 2003: 267).

이성애 제도가 강제성을 띠는 이유는 개인의 의지와 행동을 강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김미영, 2007: 310). 구조의 강제는 체계모니적으로 작동한다. 즉, 법적, 강제적 수단을 통해 명시적으로 강요하는 차원을 넘어, 정상화, 규범화를 통해 거부할 때 따르는 불이익과 차별을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내면화하게 하고 스스로를 규율화 한다는 점이다. 제도

답론으로서의 이성애는, 여성들은 당연히 남성들을 욕망할 것이라 가정하고(Hawkes, 1996: 220), '이성(異性)'을 배제한 모든 성적 관계들에는 침묵을 강요한다. 또한 이성간의 낭만적인 연애, 사랑, 결혼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로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제와 제재를 동반한다. '이반'은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도덕적으로 열등하며 사회적으로 일탈한 자로 낙인찍혀 의료적, 현상적, 사회적으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동성애 억압은 이성애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소이다. Rubin(1999: 153)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처벌을 성적 가치의 위계체계에 작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체계의 서열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결혼한 재생산적 이성애이며, 그 다음은 결혼하지 않은 일부일처제의 이성애 커플인데, 이들은 좋고 정상적이며 자연적인 섹슈얼리티로 평가받는다. 체계의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사회적인 경멸을 받게 된다. 동성애는 하단에 위치되면서 나쁘거나 비정상적이며 비자연적인 섹슈얼리티로 평가받는다. 정상적 섹슈얼리티는 존경과 합법성, 제도적 지지, 결혼의 이득 등으로 보상받는 반면에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는 정신병, 약평, 범죄, 제도적 지지의 손실, 경제적 제재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강제적 이성애가 지지되도록 성적인 가치를 위계화한다.

이성애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의 핵심은 남녀 간의 성관계가 생물학적 본능이나 성적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가 투영되는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 집중된다. Wittig(2003)는 섹스의 이분법적 규제가 강제적 이성애제도를 재생산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강제적 이성애주의의 전복이야말로 섹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의 진정한 휴머니즘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에 대한 페미니즘의 이론은 동성애/이성애가 단순한 성적 지향의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억압의 기제로서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이며 권력이 배치된 결과로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성애 규범성을 보다 포괄적인 이데올로기적 체계로 정의함으로써 사회에서 '정상성'으로 규정해온 것들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이후 스스로에게 내재한 '정상성'을 상대화하는 작업으로 확장해 나갔다(이나영, 2009: 13). 이상과 같은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미덕은 '자연의 질서'로서의 이성애 개념을 전복시키고 그것을 제도로서의 이성애 개념으로 대체하면서, 그 제도가 지지하는 성적 권력관계와 그 제도를 파생시키는 젠더 체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도전이 근대적 젠더관념의 고정된 범주에 간혀 있는 것에 머물게 되어, 범주 자체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가지 못하고 범주적 틀의 의미를 유지하거나 재획득하는 아이러니를 수반했다.

## 2. 페미니스트 퀴어(queer) 이론 : 젠더 범주의 해체

레즈비언에 대한 페미니즘 이론은 보이지 않던 존재였던 레즈비언을 드러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병든 개인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이들을 분리시키면서 집단적, 정치적 주체로 새롭게 재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섹스/젠더의 이분법에 근거한 섹슈얼리티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젠더'를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을 조직하는 정치적 구조로 해석하는 것과 달리, 페미니스트 퀴어 이론은 젠더를 규제적인 권력 체제의 작용과 효과로 개념화함으로써 섹스/젠더, 정상/비정상의 범주 자체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다.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등장한 '퀴어(queer)'는 '게이와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원래 퀴어는 남색가를 뜻하는 동시에 '이상한 사람', '별난 사람', '특이한 사람' 혹은 '정신병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Tamagne, 2001: 211), 동성애자들 스스로 이를 저항적 용어로 채택하여 재정의하고 재전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퀴어는 자신이 다르고, 일탈적이며, 이상하고 비정상이라는 사실에 그대로 직면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고 비순응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당당한 지지를 공표한다. 그래서 퀴어함은 "비전형적이고, 알고 짚어내기 힘들고, 잠재적으로 변화가능한, 그래서 무시간성, 고정성을 주장하는 분류 체계에 특정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며, 퀴어함의 도전은 "관용이나 소수화 전략을 거부하고, 자신을 이성애가 아니라 '평범함'에 대조해 정의함으로써 정상성의 체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저항을 선호하는 것"에 있다(Hall, 2003; 김미영, 2007: 330에서 재인용). 비결정성, 탄력성 자체가 퀴어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특성이기 때문에 퀴어는 동성애가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음'이며, 퀴어의 반대항은 이성애가 아니라 정상성이 된다. 다름, 독특함, 특이함, 기괴함 등에 기반한 '퀴어하기'는 정상적인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급진적인 재고를 가능하게 한다(김미영, 2007: 330).

퀴어는 자신을 정의하는 고정된 의미를 동반하지 않으며, 성적 소수자들을 연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일관된 범주를 설정하지 않는다(Jogose, 1996; 김지혜, 1998: 101에서 재인용). 따라서 '퀴어'는 단지 동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섹스와 젠더의 도식적인 분류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Tamagne, 2001: 211). 퀴어 정치학(queer politics)은 성소수자 운동의 특징이었던 한정된 정체성의 정치, 범주의 엄격함, 분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규범적인 성적 실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인정을 표방하면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뿐만 아니라 복장전환자<sup>14)</sup>, 페티시스트, S/M<sup>15)</sup> 등 다양한 성적체성을 일반적인 '기묘함'에 융합시켜 연대

14) 복장전환자(crossdresser)는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 이성의 옷을 입는 사람이다. 복장전환자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대해서 만족하며 이성과 관련된 옷을 입는데서 흥분을 느낄 뿐이므로 이

를 피하는 제후적인 정체성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페미니즘이 젠더를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으로 동원하면서 젠더 구조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했다면, 퀴어 이론은 젠더의 허구적 성격을 폭로함으로써 젠더구조의 불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퀴어이론은 젠더를 '본질'의 외화로 보는 '표현적(expressional)' 모델을 거부하고 강제적인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수행적'(performative) 모델로 해석한다. Butler는 젠더가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성별화된 몸을 생산하는 '규제적인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섹스가 젠더 역할과 정체성을 생산한다는 기존의 관념을 부정하고 젠더는 수행을 통해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utler, 2006). 다시 말해 "섹스는 이미 언제나 젠더였고, 섹스를 전(前)담론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젠더라는 문화적 구성장치의 효과"라는 것이다(Butler, 2006: 94-98). 또한 젠더는 본질적인 섹스에 붙여진 문화적 해석이 아니라, 늘 언제나 실체가 없는 수행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동안 의심받지 않고 받아들여졌던 남자(남성성)/여자(여성성)이라는 이분법의 근거를 무너뜨린다. 따라서 젠더는 명사로써 '갖는(to have)' 무엇이 아니라, 목적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하는 수행적인 행위인 것이다.

Butler는 젠더 정체성을 특정한 섹슈얼리티를 금지하는 법에 의해 형성되는 것, 즉 법의 효과라고 본다. 동시에 섹스나 섹슈얼리티도 당대의 지배적 젠더규범/이성에 이데올로기가 부과하는 명명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의미화될 수 없고, 인식 가능성조차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규율 권력의 담론 효과이자 문화적 구성물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젠더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섹스와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 사이에 '연속성의 환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 환상에 의해서 이성애 자체가 자연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부치(butch)<sup>16)</sup>와 펌(femme)<sup>17)</sup>이 "비이성애적 틀 안에서 이성애의 구성물을 반복하는

성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와는 구별된다.

- 15)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가학성 음란증(sadism)과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게 하여 성적 만족을 구하는 피학성 음란증(masochism)의 합성어이다.
- 16) 레즈비언 커플 중 남성 역할을 하는 레즈비언을 지칭하는 말이다. 부치에 대한 정의와 그 역할, 의미 등에 관해서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주로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으며, 바지만을 입는, 즉 외모와 말투, 행동에서 남성적인 사람들을 부치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부치라고 하면 성관계시에도 삽입을 하는 역할, 즉 섹스를 리드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소수자사전, 2010년 6월 10일 인용: <http://ksarc.org>).
- 17) 레즈비언 커플 중 여성스러운 레즈비언을 지칭한다. 이성애주의를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젠더규범에서 여성에게 할당된 특성과 역할을 하는 여성을 말한다. 펌은 이리해야 하고 부치는 이리해야 한다는 구분이 이성애적 모델(남편과 아내,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모방하는 것이며, 레즈비언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용어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펌과 부치의 용어의 문제점은 그런 구분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고정된 성역할로 고착화시키는 것에 있다. 나는 부치니까... 이렇게 해야 하고 저런 일은 못해라든지 마치 남성이 여성을 비하하듯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이성애적 원본이라는 것이 순전히 만들어진 위상임”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관계는“복사본과 원본이 아닌 복사본과 복사본의 관계”라는 것이다(Butler, 2006: 144-145).

젠더 규범을 벗어난 수행은 추방, 처벌,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젠더 수행은 강제적인데(Hawkes, 1996: 237). ‘완벽한 이성애적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성애는 끊임없이 이분법적 젠더를 수행하라고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애적 헤게모니 속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연결고리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취약하고, 취약하므로 강제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다양한 ‘젠더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스스로의 ‘자연스러움’을 수행하는 이른바 ‘성적 소수자’들의 ‘성 지향성’은, ‘담론의 구조물’에 불과한 이성애 자체의 아킬레스건이 된다. 이분법적 젠더규범에 기초한 ‘이성애’는 그것에 도전하지 않은 무수한 젠더 스펙트럼을 은폐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자연화되어 있는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간의 일련의 연속적인 각본을 따르지 않는 동성애자들을 주체가 아닌 비체(object)화하는 것은 이성애의 정상성과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과정이며,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권력의 행사’의 효과이며, 사회에서 유지되는 젠더의 ‘통일성’은 강제적인 이성애의 실천효과일 뿐이다(Butler, 2006: 144-145). 이런 정체성의 지속과 증식은 인식 가능성의 영역의 한계와 규제적 목적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복적인 가능성을 내포하며,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범주들을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의미화의 장으로 열어낼 때, 이분법과 고정된 범주들을 폐기할 수 있는 전복적인 재의미화가 가능하다(Butler, 2006: 41).

그러나 상당수의 페미니스트들은 퀴어이론이 레즈비언과 페미니즘을 배제하는 남성정치학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성적 위계화에 대한 비판이론으로서의 퀴어이론의 의의를 인정하지만 성적 소수자의 성이 해방되면 여성의 성적 차별도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레즈비언과 게이는 다르게 취급될 뿐만 아니라 다른 경험을 구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성애 중심사회에 도전하는 것과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Calhoun, 1994: 572).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 없다면 이성애 중심사회가 해체되어도 남성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될 위험은 상존할 수 있다.

---

이 부치가 팸을 비하하며 보거나, 팸은 언제든지 남성과 결혼할 수 있는 가짜 레즈비언이라고 보는 등 남녀차별에서 볼 수 있는 폐습들이 종종 그대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많은 레즈비언 커플은 외모나 하는 일(설거지나 요리를 하는가, 망치질을 하고 힘이 더 센가)을 성역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더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혹은 왜곡하여 드러내는 ‘팸과 부치’ 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과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소수자사전, 2010년 6월 10일 인용: <http://ksrc.org>).

또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해체주의적 입장이 억압적 구조에 대한 실질적 투쟁과 변혁을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며, 물질 세계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을 떠난 과잉 이론화에 경도되어 있는 탈정치적 담론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젠더를 원본이 없는 것에 대한 반복적 모방이라는 수행개념으로 전치시키는 것은 젠더가 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물질적 구조라는 사실을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Butler를 중심으로 한 퀴어 페미니즘은 이론의 추상성이 지닌 한계와 담론적 실천에 머문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성애 중심주의의 보편성과 절대성에 도전하면서 성적 다원주의를 주창하고, 이성애 규범 사회 속에서 차별받고 비가시화되는 동성애자들을 재전유하고 재호명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퀴어이론은 섹스/젠더 이분법이 불가능하다면 이성애/동성애 이분법마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정상성/비정상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고 평가받는다.

#### IV. 한국 사회복지(학)에 던지는 페미니즘의 다중적 함의

이상에서 논의한 바, 운동과 실천, 이론과 학문으로서의 페미니즘은 성립 초기부터 인간이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성적인(sexual)'인 존재가 되는가에 주목하고 권력과 지배 관계 안의 주요한 축으로 섹슈얼리티를 이론화하면서 동성애에 관한 기존의 관념에 도전해왔다. 페미니즘 이론들은 포스트모던의 영향을 통해서 이론적 지형을 넓혀가면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오늘날의 이해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해들은 주류 사회복지(학)가 구성해 온 '병리적이고 일탈적인 위험한 클라이언트', 혹은 '인권과 사회적 권리,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박탈된 피해자' 담론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왜곡된 권력구조를 타개할 주체적인 행위자'라는 '인식론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롭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과 지식들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페미니즘이 사회복지(학)에 던지는 함의를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 1. 이론적 함의: 섹슈얼리티의 '새로운' 이론화 가능성

서두에서 연구자들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담론 자체가 거의 '부재'하거나 빈약하며, 그 조차도 의료적 담론에 편향되어 있는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성적 소수자'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어떻게 기입(記入)할 것인가를 질문한 바 있다. 그 질문의 답은 섹슈얼리티에 관한 '새로운' 이론화에 있다.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인 구성물이며, 정체성 또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복수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레즈비어리즘, 포스트모던적인 퀴어

이론에 이르기까지 이성애/동성애, 섹스/젠더/섹슈얼리티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지점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적 소수자'에 관한 연구가 권력의 효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섹슈얼리티의 이슈에 관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사회복지(학)에서 섹슈얼리티에 관한 대안적 접근방식을 요청한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새로운' 이론화는 '성적 소수자'를 분리된 '변별적 타자'로서 병리화하고 대상화하며 피해자화했던 주류 담론들의 한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병리적인 개인의 특질이나 유전적인 소인 혹은 특별한 개인적 취향이나 선호쯤으로 치부하거나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으로 쉽게 환원시키는 '그들만의' 성적 지향의 이슈를 사회의 권력관계와 위계구조를 조직하는 현재 우리의 '섹슈얼리티'의 이슈로 전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때 섹슈얼리티는 변별적 변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을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권력의 매트릭스 안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젠더, 계급, 인종, 민족, 나이 등과 함께 우리 사회를 조직하는 중요하고 역사적인 원리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에서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해는 '강렬하고 본질적이며 생물학적인 충동'으로 믿어온 사회통념적인 틀에 한정되어 왔으며, 정체성에 대해서도 '태생적이고 본래적이며 핵심적인 무엇에 의해 변화되지 않고 단일하게 유지되는' 근대적인 정체성으로 이해해왔다(Hicks, 2008a). 또한 성별의 차이인 섹스를 매우 고유하고 본질적인 것처럼 인식하고, 젠더<sup>18)</sup>에 대해서도 이 섹스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근대적 이해에 따르면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삶에 관해서도 본질적이고 특정하게 범주화되고 종별화된 개념들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급진적이고 포스트모던적인 사조(思潮)에서 섹슈얼리티와 동성애, 레즈비어니즘에 관해 이론과 사고를 (재)구성해온 페미니즘 이론들은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우리들의 '통념'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의미화된 사회적 구성물이며 권력의 효과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성적 소수자'들에게 지워진 사회적 낙인의 실체와 뿌리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학)에서의 동성애와 '성적 소수자'에 관한 '새로운' 이론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확장의 토대가 된다.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을 넘어 주체의 정의방식을 새롭게 제안한다.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자아가 존재하며,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특징의 정체성에 의해서 개인 주체를 개념화하고, 그 특정하고 단일

18)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 관한 한국 사회복지연구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규범을 반영하고 여성에게 부가되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사회적 규범으로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여성성과 남성성의 정형화된 특징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이것이 기반을 둔 사회적 위계들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doing gender' 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성정숙·이나영, 2010: 36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정체성에 의해서 주체를 이해해왔던 근대적인 정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페미니스트들은 주체가 이미 타자화를 전제하는 이분법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공간적인 장에서 정체성을 발생시키는 구분선이기도 한 젠더와 섹슈얼리티, 계급, 연령, 인종, 학력, 연령 등과 같은 복수의 사회적 축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체성들의 경합을 통해 변화무쌍하게 구성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매트릭스(matrix)의 위치이동에 따라 개인 주체들은 적극적으로 선택되기도 하고 또 수동적으로 주어지기도 하는 새로운 정체성들을 구성해 나간다(이나영, 2009). 따라서 사회적 이슈가 개인의 정체성들 중에 어느 것을 호명하는가와 한 개인이 어떤 존재로 자신의 개인성을 경험하고 구성하는가, 그리고 어떤 주체로 자신을 상상하는가에 따라 정체성은 잠정적으로 봉합되기도 하는 동시에 새롭게 차이가 구성되기도 한다(김미영, 2007).

이렇게 경합되는 복수의 정체성 안에서 (재)구성되는, 움직이는 위치로서의 주체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학)가 견지해왔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의방식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이론적인 출발점을 제공한다. 위치성으로 주체를 정의하는 방식은 "병리적이거나 결함이 있거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내적으로 취약하거나 위협적인 충동을 소지한 사람들, 빈곤하거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등 이런 불리하고 특정적이며 본질적 요소를 소유한 '클라이언트'로서 전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한다. 복수의 정체성들과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구성되는 '클라이언트'는 의료적 담론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처럼, 환자의 주체성을 병명이나 진단명으로 쉽게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비판적인 각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라는 호명이 개인 주체의 실재(reality)이자 현존(existence)인 삶을 '클라이언트의 문제'라는 좁은 공간에 구겨 넣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체를 정의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이론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젠더와 섹슈얼리티, 계급, 연령, 인종, 학력, 연령 등과 같이 사회적 축들이 교차하는 사회적인 매트릭스의 위치에 의해서 구성되는 '주체'로서 '클라이언트'를 정의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클라이언트'에 관한 분석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어디에 위치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실천이 '클라이언트', '타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화', '타자화'에 관한 것이 되도록 이끈다. 또한 사회적인 권력 매트릭스에서의 '위치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개인적인' 설명을 사회적 구조와 맥락을 모두 반영하는 '정치적인' 설명으로 확장하는 두터운 이론화를 지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 2. 인식론적 함의: '타자화'에 대한 성찰

사회복지(학)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는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과잉

성애화된' 존재로서 오해되고 부인되어왔던 동성애자의' 사회적 실존'을 타자의 기호가 아닌, 자신의 삶의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확인하는 인식론적 전환과 이어진다. 동성애와 이성애의 이분법 역시도 실재하는 두 가지의 배타적 범주들을 지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함'을 차이로 재편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Hawkes(1996: 241)도 사람들이 느끼는 동성애에 대한 공포는 자신과의'다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동일성'을 알아차림으로써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으로 다성애적인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아는 것은 이성애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일성을 차이로 재편하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그의 성찰에 따르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모두 서로에게 "동일자로서 타자"(Hawkes, 1996: 241)이다.

이분법의 경계를 넘어 타자 대 타자의 관계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동성애자들, 즉 '그들'에 관한 이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인식론적 전환으로 쇄신된다. 진리로서 당연시되었던 생각들을 권력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드러내는 '해체'의 방식은 기존의 인식론적 한계를 직시하면서 새롭게 주체를 정의하도록 하며(McPhail, 2004: 4-7), 이렇게 새로운 방식에 따라 개인(주체)을 정의하는 것은 '다수 대 소수', '정상 대 비정상', '이성애자 대 동성애자'의 구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되는 다른 많은 이분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검토하게 하며, 이러한 작업은 사회복지(학)의 연구와 실천에서 다른 결과를 내는 많은 출발들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개인 주체를 이분법적 경계의 범주가 아니라, 경계들이 교차되고 겹치는 사회적 위치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연구현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여러 경계들의 교차되는 지점에서 경계들은 때로는 중첩되거나 겹겹이 되면서 절대적이고 대립적인 분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경계를 기준으로 한 관계설정 또한 유동적인 위치를 따라 고정되지 않고 흐르면서 절대적이었던 위계는 상대적으로 '해체'가 가능해진다. 절대적인 이분법적 분류체계의 해체는 본 연구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를 '주체 대 타자'의 관계로 구축하는 타자화 연구의 전형에서 벗어나, '타자 대 타자'와의 관계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이 새로운 관계에서 출발하는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전혀 다른 결과와 다른 함의를 갖는다.

### 3. 정책적 함의: '연대의 정치학'의 가능성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기획단(이하 기획단)<sup>19)</sup>에서 실시된 국내 최초의 전국 규모의

19) 한국 사회 성소수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단이라는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2007)’에 따르면, 성소수자로서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은 “제도적,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함(38.2%, 387명 중 148명 응답)”이었다. 특히 “동성 간 결혼제도의 부재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가 83.6%,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가 95%,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결혼을 할 생각이다.”가 56.8%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계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불안함은 가까운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함으로 직결된다. “누구와 함께 안정적으로 삶을 공유하며 돌봄과 애정을 나눌 것인가?”를 확실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과 돌봄 등 노후의 삶이 더욱 불투명하다. 사회보험, 재산분할, 의료 결정권 등 일상적 삶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적 급여들이 결혼제도를 통해 인가됨으로써 동성애자 커플들이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공유 관계를 오랫동안 맺고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한다. 즉, 파트너가 사망해도 유가족이 되지 못하고 유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파트너와 결별을 하게 될 경우는 재산분할신청이 불가하고, 또 가족수당도 수취할 수 없다. 또한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원과 수술여부의 동의, 치료과정에 대한 결정권, 사망 확인 등 모든 의료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기존의 결혼제도는 남녀 성별 분업, 고정된 성역할을 기준으로 하는 이성애가족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이 가족의 틀에 맞지 않는 독신, 동성애자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난하고 배제해왔고, 특히 ‘성적 소수자’의 가족에 대한 권리의 요구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그러나 가족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인 경향은 전통적인 핵가족의 개념에서 보다 다양해진 형태의 여러 가족의 유형들을 수용하고, 법에 따라 등록된 동성커플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거나 시민결합의 형태로 이성애처럼 동성애의 법적인 지위들을 인정하는 것이다<sup>20)</sup>.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이며, 설문지를 감수한 단체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동성애자인권연대], [고려대학교성소수자인권모임 사람과사람],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이다. 국내 LGBT 커뮤니티의 규모와 활동여부를 참조하여 전체 표본 500개를 목표로 남성 동성애자 표본 200, 여성동성애자 표본 200, 성전환자 표본 100을 설정하여 각 13개의 시도별 인구비로 나누어 각 시도지역별 예상 표본수를 설정하였다. 조사는 2007년 6월 10일부터 7월 15일 본조사와 8월 25일부터 9월 8일 추가조사를 포함하여 온라인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였다(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2010년 6월 10일 인용: <http://lgbt.kdip.org>).

- 20) 동성결혼인정은 이성부부가 가지는 책임과 권리를 동성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등의 동성결혼법(2001년)이 대표적이며, 결혼은 가능하지 않지만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반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독일, 영국 등의 많은 유럽국가와 뉴질랜드 등의 시민파트너십제도(Civil Partnership Right) 등이 있다(민주노동당, 2007).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동성간의 결혼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권의 차원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결혼을 통해 누리는 사회적 급여들이 동성애자들에게도 차별없이 개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성적 소수자의 이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성적 소수자들'에게 확보되지 않았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들을 제도적 접근을 통해 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회복지(학)의 주요한 영역이자 주요 실천 방식인 '제도적·정책적 접근'을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도화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인 삶의 수준을 진전시키고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인 제도들을 구체화하는 '실천과 행위'로 확장된 제도적·정책적 접근으로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그동안 사장(死藏)되어 온 '사회행동(social action)'과 '사회운동(social movement)'으로서의 제도적·정책적 접근을 보다 진전시킨다면 '성적 소수자'의 사회적 삶의 어두운 전망을 타개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07년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20개의 차별금지행위를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도화하고자 하였으나 보수층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의 위기를 맞았을 때, 이 법안의 차별의 금지조항들이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성별, 장애, 나이, 민족, 피부색, 용모, 가족형태, 종교, 학력, 사회적 신분 등 사회복지(학)에서 사회정의의 사명을 강조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변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에서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응은 무관심에 가까웠다. 하나의 실천 방식으로서 사회정의와 평등의 이슈와 관련되는 사회적, 법적 제도의 제도화·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연대의 정치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가 갖는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V. 나가며 :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실천적 확장을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동성애에 관한 사회복지(학)적 지식생산 양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실천적 확장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동성애에 관한 연구는 성정체성을 결정하는 본질적이며 태생적 요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부터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권력에 대한 계보학적 추적을 시도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 시작되고 정박하는 이론적, 이념적 토대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한국사회복지학에는 본격적인 연구가 사실 거의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에서 동성애에 관한 기존의 연구경향을 정리하면, 첫째, 동성애를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병리적이고 성도착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동성애자 역시도 에이즈와 동일시하여 광범위한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확산시키는 병리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의료적 담론과 둘째, 동성애자를 '병적이고 위험한 개인'이 아니라 '소수자,' '피해

자 혹은 박탈자로 이해하는 인권담론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보다 진일보한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차이들'의 병렬적 나열에 그치면서 이를 구성하는 권력관계와 위계질서에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 두 가지 경향 모두 섹슈얼리티의 본질론적 관점에 근거하며 이성애중심주의를 재생산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전히 성에 관한 생물학적 본질론에 정박되어 있는 사회복지(학)의 인식론적 토대를 해체하고 재설정하기 위해, 필자들은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관점을 본 연구의 인식론적 전제로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페미니즘에 연구의 맞을 내리고자 한 이유는 첫째, 국내외를 막론하고 페미니즘은 학제 간 경계를 넘나들며 섹슈얼리티에 관한 가장 앞서나간 이론적 통찰력과 실천적 비전을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레즈비어리즘과 수행적 젠더라는 개념은 구성주의적 관점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섹슈얼리티 이론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비판적, 실천적 학문이라는 점에서 페미니즘과 사회복지학이 가지는 상동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동성은 역설적으로 섹슈얼리티에 관한 한국사회복지학의 '후진성'과 '보수성'을 역설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면서 연구자들로 하여금 보다 '진보적'인 사회복지학의 지식생산과 실천양식을 재고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이 사회복지학에 던지는 함의를 이론적, 인식론적, 정책적 차원을 중심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학) 인식론과 실천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며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실천의 전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Dominelli(2002: 7)는 『Feminist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에서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실천의 장(場)에서 젠더를 배치하는 것이며,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세계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재)위치시키는 것(p. 9)"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사회복지(학)의 이론이나 실천의 장에 '젠더의 이슈를 배치'하는 것의 의미는 젠더구조를 하나의 핵심적 조직틀로 하여 기존의 모든 학문 영역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제시하며 학문의 경계를 확장하고 재편하려는 기획(김영희, 1999: 186)을 의미한다.

'젠더'가 단순히 성별(sex)을 재명명하고, '젠더'의 (재)배치가 단순히 여성이라는 변수를 기존의 논의에 '첨가'하는 것이라는 이해수준<sup>21)</sup>에 머물러 있는 한국사회복지학의 현실<sup>22)</sup>에서,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의 접목은 그러한 '사회복지실천의 장에 젠더를

21) Harding(1987: 5)은 페미니스트 경험주의가 기존의 실증주의적 전제에 대한 도전하지 않고, 즉 인식론적 전환 없이 단지 여성을 '부가' 하는 세 가지 방식의 '여성'에 관한 연구'를 비판한다. 첫째, 공적 영역에 대한 여성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검토, 둘째, 가치 절하된 성과에 대한 재평가, 셋째, 여성을 피해자로서 연구하는 전형들이다.

22)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연구의 특성으로부터 사회복지(학)에서 '젠더'의 배치나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학)의 접근은 우리 사회의 가



배치하는 것'을 넘어 '사회복지실천의 장에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배치'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젠더에 섹슈얼리티를 단순히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질서가 이성애중심주의와 연동하여 움직이는 것에 대한 통찰이며, 이로써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구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동성애자의 삶과 복지에 대한 모색이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장에서 우리사회의 남성중심적 위계관계 및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무엇보다 젠더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섹슈얼리티와 상호구성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은 계급과 민족, 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를 구성하는 수많은 억압의 축들이 맥락적으로 상호교차하는 방식에 대한 민감성을 요청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시대에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을 급진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수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열려 있는 실천적 학제로써 사회복지학의 너른 지평이,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산적 수용과 접목을 통해 동성애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부장주의와 가족 중심주의 반영하여 어머니, 아내, 가족 돌봄자로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사회적 규범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여성'을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의존적이고 취약한 클라이언트 계층으로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집중하고 있었다. 연구의 주제에서는 '여성의 빈곤', '자녀양육과 가족의 돌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접근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세 번째로 나타난 '일-가정 양립이나 가사노동의 분담'과 같은 양성평등의 주제는 최근의 정책 아젠다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 경향들은 사회복지(학)에서의 젠더에 대한 이론화와 연구, 실천 등이 보수적인 담론 안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성정숙·이나영, 2010: 363-364).

## 참고문헌

- 강병철·하경희(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에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3), 267-289.
-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 9-32.
- 공성욱·오강섭·노경선(2002). "남성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41(5), 930-941.
- 구은미 외 공저(2009). *아동·청소년복지*. 서울: 학지사.
-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 권영설(2003). "소수자 권리보호의 법적 기초". *법제연구*, 23.
- 권진숙·오현숙(1995). "임상사회사업실천에서의 성적 이슈에 관한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 139-159.
- 김미영(2007). "성정체성의 복합성: 레즈비언의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0, 301-373.
- 김연희(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한국사회복지학*, 35, 117-144.
- 김영희(1999). "페미니즘과 학문의 객관성". *여성과 사회*, 10, 185-213.
- 김유니(2006).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동성애적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울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승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권정혜(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69-981.
- 김재엽·노충래·최수찬·조준범. (2005).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고찰 : 위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3, 29-57.
- 김지혜(1998). "레즈비언/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서구 레즈비언 이론의 발전과정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미(2005). "청소년의 성적 지향에 따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철(2005). "거리 노숙인의 인권과 현장보호체계". *월간 복지동향*, 77, 24-26.
- 노혜진·김교성(2008).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중단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167-196.
- 민주노동당(2007). "동반자등록법 공약(권영길의 약속)". <http://lgbt.kdnp.org>
- 박김수진(2008). "레즈비언 바로알기". 제1기 레즈비언전문상담원 교육과정 자료집.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박영미(2008).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11-41.
- 배화옥·김유경(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 분석". *보건사회연구*, 29(2), 55-76.
- 서동진(2005). "인권, 시민권 그리고 섹슈얼리티 : 한국의 성적 소수자 운동과 정치학". *경*

- 제와 사회, 67, 66-87.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 다문화가족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기획단(2007). "성소수자 사회의식 조사". <http://lgbt.kdnp.org>
- 성정숙이나영(2010). 사회복지연구를 위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비평과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62(2), 349-373.
- 성정숙이현주(2010). "동성애자인권활동가의 청소년기 경험과 탄력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73-204.
- 손병돈김기탁권선진박지영이종복이혜경 등(2008). 사회복지와 인권. 파주: 양서원.
- 송다영(2003). "사회적 배제 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295-319.
- 윤혜미(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85-108.
- 이나영(2009).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 역사와 정치학의 이론화". *경제와 사회*, 82, 10-37.
- 이방현(2007).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모형개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79-682.
- 이익섭최정아 이동영(2005).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4, 49-81.
- 이희연(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기구의 사회적 배제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사회보장연구*, 25(3), 281-315.
- 전홍규(2005). "노숙인과 인권: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본 노숙인의 거주". *도시와 빈곤*, 78, 38-66.
- 조현준(2008). "옴니가 해제".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파주: 문학동네, 13-43.
- 최합김성국 정근식유명기 편(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파주: 한올아카데미.
- 한정혜주지현정다겸(2009). "생애과정관점에서 본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26, 87-121
- 한국레즈비언권리연구소(2006).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 한국레즈비언상담소(2005~2008). *상담사례보고*.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성적소수자사전". <http://ksrc.org>,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연구보고 06-R15)*.
- 한인섭양현아 편 (2005). *성적 소수자의 인권*. 서울: 사람생각
- 한인영김유정(2006). "사회복지교육 국제기준에 비추어본 한국의 다양성 교육". *한국사회복지교육*, 2(1), 105-120.
- 한채윤(2002). "동성애-결혼과 가족의 획일성 깨기". *사회비평*, 33, 288-299.
- 함인희(2003). "청소년 동성애자를 향한 사회학적 성찰". *청소년상담연구집*, 49, 7-21.
- Akerlund, M. & Cheung, M.(2000) Teaching Beyond the Deficit Model : Gay and Lesbian Issues among African Americans, Latinos and Asian American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6(2), 279-291.
- Anderson, A. L.(1998). Strengths of Gay Male Youth : an Untold Story. *Child an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5(1), 55-71.
- Bayliss, K.(2000). Social Work Value, Anti-Discriminatory Practice and Working with Older Lesbian Service User. *Social Work Education*, 19(1), 45-53.
- Ben-Ari, A. T.(2001). Homosexuality and Heterosexism : Views from Academ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1, 119-131.
- Bergh, N. A. D. & Crisp, C.(2004). Defining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with Sexual Minorities :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Education and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0(2), 221-238.
- Berkman, C. S. & Zinberg, G.(1997). Homophobia and Heterosexism in Social Worker. *Social Work*, 42(4), 319-332.
- Blundo, R.(2002). 정신건강 : 관점의 전환. In R. Greene (Eds.), *사회복지와 탄력성 .양육 외 영역*, 167-190, 서울: 나눔의 집.
- Bobbe, D. E.(2002). Treatment with Lesbian Alcoholics : Healing Shame and Internalized Homophobia for Ongoing Sobriety. *Health & Social Work*, 27(3), 218-222.
- Brown , H. C.(2008). Social Work and Sexuality, Working with Lesbian and Gay Men: What Remains the Same and What Is Different? *Practice: Social Work in Action*, 30(4), 265-275.
- Brownlee, K., Sprakes, A., Saini, M., O'Hare, R., Kortess-Miller, K., & Graham, J.(2005). Heterosexism among Social Work Students. *Social Work Education*, 24(5), 485-494.
- Butler, J.(2006). 젠더 트러블 :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진부. 조현준 역. 파주: 문학동네.
- Calhoun, C.(1994). Separating Lesbian Theory from Feminist Theory. *Ethics*, 104, 558-581.
- Camilleri P. & Ryan, M.(2006).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nd Their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Homosexual Parenting as a Alternative Family Unit : an Australian Study. *Social Work Education*, 25(3), 288-204.
- Carr, S.(2008). Sexuality and Religion : a Challenge for Diversity Strategies in UK Social Care Service Development and Delivery. *Diversity in Health and Social Care*, 5, 113-122.
- Charnley, H. M. & Langley, J.(2007). Developing Cultural Competence as a Framework for Anti-heterosexist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7(3), 307-321.
- Collins, H. P.(2003). The Politics of Black Feminist Thought. In S. K. Kim, & C. MaCann (Eds.), *Feminist Theory: Local and Global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318-337.
- Cower, C. D., Anderson, K. M., & Snively, C. A(2006). Assessing Strengths: the Political Context of Individual, Family, and Scommunity Empowerment. In D. Saleebey (Eds.),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4th ed.).

- Boston: Allyn & Bacon, 93-114.
- Crisp, C. and McCave, E. L.(2007). Gay Affirmative Practice : a Model for Social Work Practice with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 *Chil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4, 403-421.
- Dominelli, L.(2002). *Feminist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Palgrave.
- Elze, D. E.(2002). Risk Factors fo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Adolescents. *Social Work Research*, 26(2), 89-100.
- Fish, J.(2008). Far from Mundane : Theorizing Heterosexism for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Education*, 27(2), 182-193.
- Foreman, M. & Quinlan, M.(2008). Increasing Social Work Students' Awareness of Heterosexism and Homophobia : a Partnership between a Community Gay Health Project and a School of Social Work. *Social Work Education*, 27(2), 152-158.
- Foucault, M.(1976). *성의 역사 ; 삶의 의지*. 이규현 역. 서울: 나남.
- Green, R.(2005). The Use of Two-Mentional Social Scale to Assess Social Worker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Social Work Research*, 29, 57-60.
- Harding, S.(1987). Introduction: Is There a Feminist Method? In S. Harding (Eds.), *Feminism and Methodology: Social Science Issues*.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15.
- Hardman, K. L. J.(1997). Social Workers' Attitudes to Lesbian Cli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7, 545-563.
- Hawkes, G.(1996). *섹슈얼리티와 사회*. 임인숙 역. 서울: 일신사.
- Hicks, S.(2008a). Thinking Through Sexuality. *Journal of Social Work*, 8(1), 65-82.
- Hicks, S.(2008b). What Does Social Work Desire? *Social Work Education*, 27(2), 131-137.
- Ife, J.(2001).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김형식, 여지영 공역. 서울: 인간과 복지.
- Jeyasingham, D.(2008). Knowledge/Ignorance and Construction of Sexuality in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Education*, 27(2), 138-151.
- Jones, T. C.(2002). Characteristics of a Group of Lesbian and Gay Radical Street Activists.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14(4), 39-54.
- Langley, J.(2001). Developing Anti-Oppressive Empowering Social Work Practice with Older Lesbian Women and Gay Me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1, 917-932.
- Lim, H. S. & Johnson, M.(2001). Korean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7(3), 545-554.
- MacKinnon, C. A.(1997). Sexuality. In L. Nicholson (Eds.), *The Second Wave: A Reader in Feminist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58-180.
- Mallon, G. P.(2008). *Social Work Practice with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New York: Routledge.
- McPhail, B.(2004). "Questioning Gender and Sexuality Binaries: What Queer Theorist, Transgendered Individuals, and Sex Researchers Can Teach Social Work.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17(1), 3-21.

- Mule, N. J.(2006). Equity Vs. Invisibility : Sexual Orientation Issues in Social Work Ethics and Curricula Standards. *Social Work Education*, 25(6), 608-622.
- Newman, B. S., Dannenfelser, P. L., & Benishek, L.(2002). Assessing Beginning Social Work and Counseling Students's Acceptance of Lesbian and Gay Me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8, 273-288.
- Proctor, E. & Groz., V.(1994). Risk Factors for Suicide among Gay, Lesbian, Bisexual Youths. *Social Work*, 39, 504-513.
- Radicalesbians(1997). The Woman Identified Woman. in Nicholson, L.(ed.), *The Second Wave: a Reader in Feminist Theory*. New York: Routledge, 153-157.
- Reichert, E.(2003). 사회복지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역. 서울: 인간과 복지.
- Rich, A.(1980).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Signs*, 5(4), 631-660.
- Rosenberg, S., Rosenberg, J., Huygen, C., & Klein, E.(2005). No Hide To Hide : *Out of the Closet and Mentally Ill, Best Practices in Mental Health*, 1(1), 72-85.
- Rubin, G. S(1999).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politics of sexuality. In R. Parker, & P. Aggleton (Eds.), *Culture, Society and Sexuality*. London: UCI Press, 143-178.
- Russell (1996). 게이 100. 이현숙 역. 서울: 사회평론.
- Saewyc, E. M.(2006). Hazard of Stigma: the Sexual and Physical Abuse of Gay, Lesbian, and Bisexual Adolescents in the United Sates and Canada. *Child Welfare*, 85(2), 195-213.
- Saleebey, D(2006). Introduction: Power in the People. In D. Saleebey (Eds.),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4th ed). Boston: Allyn & Bacon, 1-24.
- Swank, E. & Raiz, L.(2010). Attitudes toward Gays and Lesbians among Undergraduate Social Work Students. *Affilia*, 25(1), 19-29.
- Tamagne, F.(2001). 동성애의 역사 : 문학과 예술을 통해 본 동성애, 그 탄압과 금기의 기록. 이상빈 역. 서울: 이마고.
- Tew, J.(2006). Understanding Power and Powerlessness : Towards a Framework for Emancipatory Practice in Social Work. *Journal of Social Work*, 6, 33-51.
- Thompson, B.(2003). Lazarus Phenomena : an Exploratory Study of Gay Men Living with HIV. *Social Work in Health Care*, 37(1), 87-115.
- Tully, C. T.(2000). *Lesbians, Gays, The Empowerment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Untied Nations(1948). "세계인권선언". <http://www.ohchr.org>.
- Voorhis, R. & Wagner, M.(2002). Among the Missing : Content on Lesbian and Gay People in Social Work Journals. *Social Work*, 47(4), 345-354.
- Weeks, J.(1986).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서동진, 채규형 공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 Wiener, L. & Siegel, K.(1990). Social Worker's Comfort in Providing Service to AIDS

Patients, *Social Work*, 35, 18-26.

Wisniewski, J. J. & Toomey, B. G.(1985). Are Social Workers Homophobic?. *Social Work*, 32(5), 454-455.

Wittig, M.(2003). One Is Not Born a Woman. in Kim, S. K. & MaCann, C.(eds.), *Feminist Theory. Local and Global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249-254.

K C I

## Abstract

### The Trend and Prospect of Study on 'Sexual Minority' in Social Welfare and Practice : Implications of Feminist Theories on Sexuality

Sung, Jung-Suk.(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Lee, Na-Young(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existing theoretical as well as analytical scope of 'sexual minority' in Social Welfare, and to (re)construct and expand it incorporating feminist theories on sexuality. The body of literature on sexual minority or homosexuality in social welfare in Korea as well as in the West can be characterized as two distinct features: first, medical discourse leaning on pathological perspective which perceives homosexuality as a disease or defect, homosexual as a pervert; and second, human rights perspective premised upon the idea of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both which are anchoring at 'essentialism.'

Based upon the understanding of sexuality as a social construct, we argue that feminist insight on sexuality can lead to reconceptualizing homosexuality and reorienting theories and practices in social welfare. From radical feminism to postmodern queer theories, feminists have developed diverse ideas and complex theories on sexuality and homosexuality, including the concept of 'compulsory heterosexuality,' 'lesbianism as political resistance,' and 'performative gender.' For feminists, particularly, sexuality which is constructed in the complex power matrix of dominations to producing and maintaining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s is not merely a distinctive variable, but one of the important organizational principles such as gender, class, race, age, and nationality. This epistemological principle will hopefully shed lights on alternative 'knowledge' on homosexuality in social welfare, and lead to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ts critical expansion in theory and practice.

Key words: sexuality, sexual minority, homosexuality, heterosexuality, lesbian, sexual orientation, medical discourse, human rights discourse, social construction, performative gender, radical feminism, queer theory.